환 경 국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환 경 과

(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사업) (P - 8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1월 ~ 2019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전지역

○ 사업규모 : 포획틀 2개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4,000**				**4,000**	**4,000**	
국 비		2,000				2,000	2,000	
도 비		2,000				2,000	2,000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방지를 위해 추가 포획틀 설치 필요에 따라 포획틀 설치비 필요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19조
근거내용	**제19조(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·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.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야생멧돼지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가 필요함

○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포획틀 설치 필요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 멧돼지포획틀 설치비 : 2,000,000원 * 2개 = 4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07. : 국고보조금 교부신청
- 2019.12 : 포획틀 설치업체 선정 및 계약
- 2019.12 : 야생멧돼지 출몰 가능지역 포획틀 설치 및 관리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환경정책팀장 김기수	담당자	환경8급 류근우	전화	2245

(멧돼지 폐사체 처리비(ASF)) (P - 83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전지역

○ 사업규모 : 관내 확인된 야생멧돼지 폐사체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적정처리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3,000**				**3,000**	**3,000**	
국 비		1,500				1,500	1,500	
도 비								
시 비		1,500				1,500	1,5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적정처리 필요에 따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필요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19조
근거내용	**제19조(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·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.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야생멧돼지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가 필요함

○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, 우리 시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적정처리가 필요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멧돼지 폐사체 처리비(ASF)	201-01 사무관리비	·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- 1,000,000원 * 3건 = 3,000,000원	=	3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19. : 국고보조금 교부신청
- 2019.12. : 명시이월 요구
- 2020.01. :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
- 2020.01.~2020.12. : 야생멧돼지 폐사체 확인시 적정처리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환경정책팀장 김기수	담당자	환경8급 류근우	전화	2245

(석면피해구제급여) (P - 8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전역

○ 사업규모 : 64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라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483,301**	**405,281**	**438,120**			**-32,839**	**-78,020**	
국 비	434,971	364,356	394,308			-29,952	-70,615	
도 비	24,165	20,242	21,906			-1,664	-3,923	
시 비	24,165	20,683	21,906			-1,223	-3,482	
기 타								기금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석면피해 인정자 인정기간 만료 및 인적사항 변동 등으로 매월 지급액 감소하여 예산 감액

○ 광명시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석면피해인정자(1명) 구제급여에 대한 시비 부담금(5%) 지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석면피해구제법	제17조 시행령 제13조
근거내용	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담한다.	
	법 제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1. 기금: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: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18.11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 신속 구제

○ 광명시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석면피해인정자(1명)에 대해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할 구제급여를 광명시에서 지급함에 따라 구제급여(기금 90%, 도비 5%, 시비 5%) 중 시 부담금(5%)를 광명시로 반환하고자 함 [※ 승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김포시로 통보(2019.09.20.)]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석면피해구제급여	301-12 기타보상금	· 석면피해인정자(63명) 구제급여 404,840,000원 = 404,840	
	308-07 자치단체간부담금	· 석면피해인정자(1명) 시비부담금 440,820원 = 441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0. : 2019년 국도비 보조금 (가)내시
- 2019.01.~2019.12. :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매월 지급
- 2019.09. : 광명시 시비 부담금 반납 요청[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조 공문]
- 2019.09. : 2019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 (변경)내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석면피해구제급여 41명 지급	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승인받은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
2018년	석면피해구제급여 47명 지급	
2019년	석면피해구제급여 63명 지급 중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285,100	276,738	-	8,362	
2018년	483,301	307,036	-	176,265	
2019년	438,120	374,311	-	63,809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환경안전팀장 배은영	담당자	환경9급 정여진	전화	2259

(조기폐차 업무대행) (P - 8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관내

○ 사업규모 : 1,700대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전문적인 업무처리로 조기폐차 행정처리 능률 향상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10,400**	**24,000**	**10,400**			**13,600**	**13,6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10,400	24,000	10,400			13,600	13,6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로 수요급증에 따른 조기폐차 사업량 증대(1,300대->3,000대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률	제27조 제3항
	대기환경보전법률	제78조 제1항
근거내용	**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 제3항** 서울특별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	
	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8조 제1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및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를 절차대행자(한국자동차환경협회)에 위탁함에 따라 소요되는 관리비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상세하게 작성)	비 고
조기폐차 업무대행비	201-01 사무관리비	·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: 8,000원 * 1,700대 = 13,6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1. : 추진계획 수립
- 2019.02.~2019.05. : 업무대행비 지급
- 2019.09. : 추진계획수립
- 2019.12. : 업무대행비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○ 조기폐차 1,400대(2016년 미지급 금액 지급) ○ 8,000원 * 1,400대 = 11,200,000원	
2018년	○ 조기폐차 1,300대 ○ 8,000원 * 1,300대 = 10,400,000원	
2019년	○ 조기폐차 2,950대 (본예산 : 1,248대 2회추경 : 1,702대) ○ 8,000원 * 1,300대 = 10,400,000원 (1,700대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12월에 집행예정)	11.11까지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11,200	11,200	-	-	
2018년	10,400	10,400	-	-	
2019년	10,400	10,400	-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기후대기팀장 김성훈	담당자	환경9급 박미선	전화	2256

(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) (P - 8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9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감암로 125 등 3개소

○ 사업규모 :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3대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을 위해 설치한 '공용 전기차 급속충전기'의 수리수선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영 및 충전 편의성 증대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4,000**			**4,000**		**4,000**	사무관리비(증액)
국 비								1,000→4,000
도 비								공공운영비(감액)
시 비		4,000			4,000		4,000	3,000→0
기 타								※ 사업내 예산증감없음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기 설치 중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3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통계목 변경[공공운영비(감)→사무관리비(증)]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내 시스템(결제망) 변경을 통해 신속한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원활한 운영환경 및 충전서비스 제공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 고
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	201-01 사무관리비	· 급속충전기 수선유지비 1,333,400원 * 3대	=	4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 :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수리수선
- 2020.01.~2020.12. :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·관리 실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○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관리	11.30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4,000	-	-	4,000	11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기후대기팀장 김성훈	담당자	환경8급 조문숙	전화	2255

(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) (P - 84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5월 ○ 위 치 : 관내

○ 사업규모 : 미세먼지(비산먼지 등) 발생사업장, 매연 및 공회전 단속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업장·공사장 불법배출 등 미세먼지 배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감시인력 시범 운영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67,200**			**85,200**	**-18,000**	**67,200**	
국 비		33,600			42,600	-9,000	33,600	
도 비		16,800			21,300	-4,500	16,800	
시 비		16,800			21,300	-4,500	16,8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중앙부처 내역사업이 2개로 편성(자본보조, 경상보조)되어 지자체 세부사업도 2개로 구분하여 편성 필요
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-16992(2019.10.14.)

○ 따라서 2회 추경에 편성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 85,200천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,000천원을 감하고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8,000천원을 편성하였음

예산과목				당초 요구액	변경 요구액	증감	비고
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
대기오염 저감 (차량부문)	미세먼지 불법 배출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	101 인건비	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53,200	-	-	
		201 일반운영비	01 사무관리비	14,000	-	-	
		405 자산취득비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18,000	0	-18,000	
	미세먼지 불법 배출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 (장비지원)	405 자산취득비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0	18,000	18,000	세부사업 신설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	제3조
근거내용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지원

- 미세먼지 배출원(공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) 예방·감시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원 측정 및 관리 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지원	101-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	· 인건비 - 기본급 : 1,800,000원 * 4명 * 6월 = 43,200,000원 - 보 험 : 200,000원 * 4명 * 6월 = 4,800,000원 - 여 비 : 10,000원 * 4명 * 130일 = 5,200,000원	=	53,200	
	201-01 사무관리비	· 차량임차료 : 700,000원 * 2대 * 6월 = 8,400,000원 · 피복비 : 200,000원 * 4명 = 800,000원 · 교육비 : 350,000원 * 4명 = 1,400,000원 · 운영경비 : 3,400,000원	=	14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 :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민간감시원 모집공고
- 2019.12.~2020.05. : 민간감시원 운영

○ 주요 업무

-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,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지원, 미세먼지 관련 연구 용역 수행사의 배출원 현장 방문 지원,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업무 지원, 행정지원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67,200	-	67,200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기후대기팀장 김성훈	담당자	행정7급 김형옥	전화	2254

(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지원(장비지원)) (P - 85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5월 ○ 위 치 : 관내

○ 사업규모 : 미세먼지(비산먼지 등) 발생사업장, 매연 및 공회전 단속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업장·공사장 불법배출 등 미세먼지 배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감시인력 시범 운영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18,000				18,000	18,000	
국 비		9,000				9,000	9,000	
도 비		4,500				4,500	4,500	
시 비		4,500				4,500	4,5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중앙부처 내역사업이 2개로 편성(자본보조, 경상보조)되어 지자체 세부사업도 2개로 구분하여 편성 필요
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-16992(2019.10.14.)

○ 따라서 2회 추경에 편성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 85,200천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,000천원을 감하고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8,000천원을 편성하였음

예산과목				당초 요구액	변경 요구액	증감	비고
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
대기오염 저감 (차량부문)	미세먼지 불법 배출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	101 인건비	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53,200	-	-	
		201 일반운영비	01 사무관리비	14,000	-	-	
		405 자산취득비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18,000	0	-18,000	
	미세먼지 불법 배출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 (장비지원)	405 자산취득비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0	18,000	18,000	세부사업 신설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	제3조
근거내용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지원

- 미세먼지 배출원(공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) 예방·감시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원 측정 및 관리 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지원(장비지원)	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· 간이측정기 구입 - 9,000,000원 * 2대	=	18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 : 미세먼지 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구매(미세먼지 간이측정기)
-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인력이 간이측정기를 휴대하여 미세먼지 측정
- 주요측정장소
  ·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: 김포대로(48번 국도), 사우중로, 돌문로 일부
  ·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장소 측정 및 모니터링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18,000	-	18,000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환경과	기후대기팀장 김성훈	담당자	행정7급 김형옥	전화	2254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자원순환과

(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) (P - 87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1월 ~ 2020년 2월 ○ 위 치 : 하성면 마곡리 479-15번지 일원

○ 사업규모 : 방치폐기물 7,105톤 처리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방치폐기물의 조속 처리를 통하여 주변 환경 피해 방지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596,820**			**1,591,429**	**-994,609**	**596,820**	
국 비		0			1,114,000	**-1,114,000**		
도 비		179,046			143,229	35,817	179,046	
시 비		417,774			334,200	83,574	417,774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국비 지원액을 당초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편성 지원하려고 하였으나, 재배정 방식으로 변경교부하여 시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감액. [환경부 방침]

- 국비 재배정액 1,392,580,000원(1차 : 1,114,000,000원, 2차 : 278,580,000원)은 *dBrain*으로 관리

  * dBrain :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.

○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국비 추가 재배정 및 도비 추가 내시로 시 예산 증액 편성 반영.

- 국비 재배정(278,580,000원 : 70%), 도비 내시(35,817,000원 : 9%), 시비 추가 부담(83,574,000원 : 21%)
- 폐기물 처리단가가 당초 예산 편성시 223,800원에서 280,000원으로 상승하여 이를 반영.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환경정책기본법	제55조제1항
근거내용	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근거법령	폐기물관리법	제49조
근거내용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화재발생 후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폐기물을 조기 적정처리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처리단가 상승을 감안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

○ 방치폐기물 전체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처리

총 처리비용 : 280,000원 × 7,105톤 = 1,989,400천원

※ 총 처리비용중 국비 재배정액을 감액(70%)하고, 도비 및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반영(30%)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	401-01 시설비		=	-994,609	
		- 국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 (전체 처리비용의 70%, dBrain으로 관리)	=	-1,114,000	
		- 도비 추가 내시분 증액 반영 (경정)179,046,000원-(기정)143,229,000원	=	35,817	
		- 국·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증액 반영 (경정)417,774,000원-(기정)334,200,000원	=	83,574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7. 3. : 방치폐기물 발생
- 2017.12. : 방치폐기물 덮개 설치
- 2018.11. : 방치폐기물중 일부 처리(482톤 : 7,587톤 → 7,105톤)
- 2019.07. : 기본계획수립
- 2019.10. :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계획 수립, 대집행 계고 및 영장 통지
- 2019.11. : 국비 추가 재배정 및 도비 추가 가내시
- 2019.12.~2020.02. : 행정대집행 실행(행정대집행 절차 준수)
- 2020.03. : 대집행비용 징수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화재폐기물 정리를 위한 덮개 설치(2017.12.)	
2018년	방치폐기물 일부(482톤) 처리 (2018.11.)	
2019년	행정대집행 처리계획 수립 및 계고, 영장 통지(2019.10.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0,000	19,800	-	10,200	
2018년	-	-	-	-	
2019년	596,820	-	596,820	-	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	
현장사진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자원순환과	자원지도팀장 이순묵	담당자	환경9급 홍준서	전화	2636

(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미지급 부가가치세 지급) (P - 87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
○ 사업규모 : 83,000천원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 지급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-	**83,000**	-			**83,000**	**83,0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-	83,000	-			83,000	83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우리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에 부가세 환수 부과통지에 따라 미지급했던 부가가치세를 2019. 9. 27. 법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고자 함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폐기물관리법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	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제16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
근거내용	**폐기물관리법 제14조**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**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**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,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18년 경기도 감사에 따라 김포시와 수의협약을 맺었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청솔산업㈜에 부가가치세 환수 통지를 하였으나, 부과금 채무부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하였으며 2019. 09. 27. 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 고
		합계		83,000	
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미지급 부가가치세 지급	305-01 배상금등	· 미지급 부가가치세 · 지연손해금	= =	75,102 7,898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 04. :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 조사개시 통보 (경기도 → 시)
- 2018. 10. :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사전 통지
- 2018. 11. : 청솔산업(주)에서 부과금 채무부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장 접수
- 2019. 09. : 판결선고 (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)
- 2019. 12. : 3차 추경 반영
- 2019. 12. : 미지급 부가가치세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자원순환과	자원재활용팀장 이수영	담당자	공업8급 이나래	전화	2776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공원녹지과

(하성근린공원 확충사업) (P - 88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4월 ~ 2020년 6월 ○ 위 치 : 하성면 하성로 585 일원

○ 사업규모 : 편의시설물 53개 설치, 공원 전기등 53개 설치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하성근린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전기공사를 통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질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1,300,000**		**900,000**		**400,000**	**1,300,0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1,300,000		900,000		400,000	1,300,000	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하성근린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물 확충비 및 전기공사비 확보 예산액 증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	제19조 제1항
근거내용	도시공원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·관리한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20년 1월 하성근린공원 주차장 및 녹색쉼터 조성공사 착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하성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교체,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

○ 편의시설물 설치(육각정자 1, 파고라 2, 트랠리스 4, 등의자 24, 화장실 1, 이동식초소 1, 음수대 1, 안내판 19)

○ 전기공사(보안등 18, 잔디등 35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하성근린공원 확충사업	401-01 시설비	합 계	=	400,000	
		· 하성근린공원 편의시설물 확충비 - 4,717,000원 * 53개	=	250,000	
		· 하성근린공원 전기공사비 - 2,830,000원 * 53개	=	15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04. ~ 2019.10. : 하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준공
- 2019. 12. ~ 2020.06. : 하성근린공원 조성(주차장 및 녹색쉼터 조성) 공사 착공 및 준공
- 2020. 02. ~ 2020.06. : 하성근린공원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및 준공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1,300,000		1,300,000		900,000		400,000	-	
공정별	설계비	40,254		40,254		40,254				
	보상비									
	공사비	1,259,746		1,259,746		859,746		400,000	-	
	감리비									
	부대비								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하성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(변경)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900,000	40,254	859,746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1
이상
(칼라)

편의시설물 배치도

■ 시설물 수량표

구분	기호	명칭	규격	단위	수량	비고
시설물		육각정자	6,500x5,600xH5,000	개소	1	
		파고라	5,100x3,200xH2,700	개소	2	
		트렐리스	3,000x2,000xH3,000	개소	4	
		등의자	1,600x680xH815	개소	24	
		연석의자	W400xH500	m	50.0	
		자연석쌓기	평균 H=1.0m	m	180.0	
		야외 화장실	12,000x3,200x3,500	개소	1	
		관리초소	2,500x2,000xH2,375	개소	1	
		음수대	Ø1,150xH1,240	개소	1	
		침목계단 A	W2,500, 10단	식	1	
		침목계단 B	W2,000, 7단	식	1	
		침목계단 C	W2,000, 7단	식	1	
		주차안내판	장애인전용	개소	2	
		주차안내판	어린이우선	개소	1	
		주차안내판	여성전용	개소	1	
		시설안내판	1,200x900	개소	2	
		방향안내판	680x140 4방향	개소	6	지정장소
		위치안내판	2200x1300	개소	6	지정장소
		종합안내판	3000x1400	개소	1	
		주차블럭	750x150x120	EA	250	

전기공사 시설배치도

현장사진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공원조성팀장 정성현	담당자	시설8급 김대규	전화	2346

(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사업) (P - 88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7월 ~ 2020년 6월 ○ 위 치 :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85

○ 사업규모 : 물놀이장 조성,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태산패밀리파크 내 물놀이장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서비스 제고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600,000**			**1,000,000**	**-400,000**	**600,0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600,000			1,000,000	-400,000	600,000	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태산패밀리파크내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,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2019년 2회추경시 편성하였으나,

○ 경기도에서 추진한 '2020년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' 최종 편성안에 동일 사업(예산액 4억원)이 선정됨에 따라

○ 2020년 본예산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4억원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시비 5억 원 중 4억원을 감액하고자 함.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제10조 제1항 제2호
근거내용	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·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	

근거법령	물환경보전법	제61조의2 제2항
근거내용	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2019. 7월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태산패밀리파크 내 물놀이장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시설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많아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원서비스 제고

○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강화된 수질관리 기준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장치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	401-01 시설비	합 계	=	600,000	
		· 실시설계비 : 80,000,000원 * 1식	=	80,000	
		· 물놀이장 리모델링 : 1,000,000원 * 400㎡	=	400,000	
		·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 : 550,460원 * 218㎡	=	120,000	

※ 총사업비 산출내역

· 실시설계비 : 80,000,000원 * 1식 = 80,000천원
· 물놀이장 리모델링 : 1,000,000원 * 800㎡ = 800,000천원
·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 : 550,460원 * 218㎡ = 120,000천원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1,000,000		600,000			1,000,000	-400,000	400,000	
공정별	설계비	80,000		80,000			80,000			
	보상비									
	공사비	920,000		520,000			920,000	-400,000	400,000	
	감리비									
	부대비		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07. 08. : 특별조정교부금 교부(5억)
- 2019. 07. : 성립전예산 편성
- 2019. 09. ~ 2019. 11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- 2019. 11. ~ 2019. 12. :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
- 2020. 02. : 공사발주
- 2020. 03. ~ 2020. 06. : 공사착공 및 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0 물놀이장 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- 사업비 : 72,101,500원 - 기 간 : 2019.09.30.~11.18 - 내 용 : 물놀이장 1개소, 바닥분수 정비 등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1,000,000	72,102	527,898	-	3회 추경 4억 감액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1
이상
(칼라)

현장사진
(칼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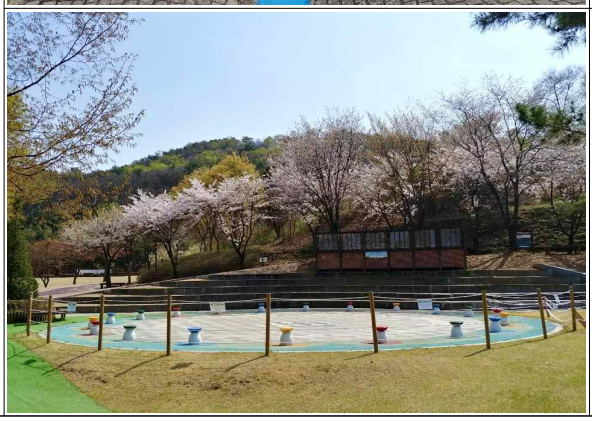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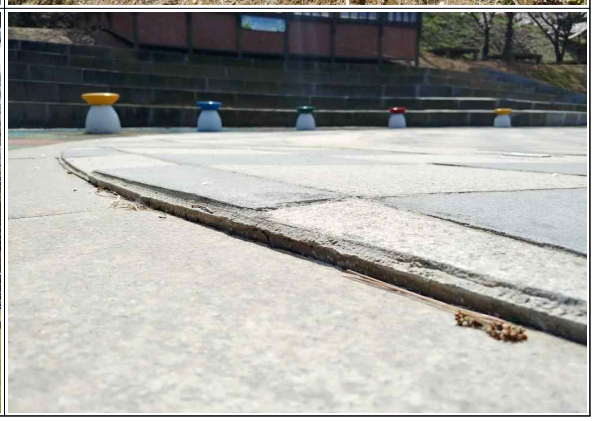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휴양팀장 황지영	담당자	녹지6급 황지영	전화	5985

(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) (P - 88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관내 가로수가로화단쌈지공원 등

○ 사업규모 : 가로수 250km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관내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림 조성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24,000**	**29,700**	**25,000**			**4,700**	**5,7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24,000	29,700	25,000			4,700	5,700	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도시림 관련 민원의 증대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민원 해결에 투입되는 장비와 부품이 수동식임으로 민원 처리가 용이하지 않음. 따라서, 충전식 기계장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70조 제4항
근거내용	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, 지방자지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일반적 작업 도구인 손톱이나 고지톱은 근로자 근골격계의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장시간 업무 시,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. 따라서, 첨단 장비와 안전장비를 동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합 계	=	4,700	
		· 기계톱 구입 500,000원 * 1대 · 전동 고지가위 구입 800,000원 * 4대 · 그라인더 구입 500,000원 * 2대	= = =	500 3,200 1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 : 가로숲길 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 (4,700천원 집행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도시림관리 차량 구입(나르미 1톤 봉고) 1대 구입	
2019년	차량탑재형 방역기(1,000L) 1대 구입 기계톱 2대 구입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4,000	23,053	-	947	
2019년	25,000	24,825	-	175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도시녹화팀장 김선희	담당자	행정9급 임하은	전화	2365

(사방사업) (P - 89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
○ 사업규모 : 사방시설 점검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방댐 및 산사태 예방시설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28,047**	**31,475**	**11,097**			**20,378**	**3,428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28,047	31,475	11,097			20,378	3,428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산림과-27189('19.11.20.)호「2019년 사방사업 시·군부담지시 변경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납입고지(최종)」에 따른 납임금 추가 배정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사방사업법	제1조
근거내용	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비의 자치단체부담금이 증가함에따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사방사업	308-07 자치단체간부담금	합 계	=	31,475	
		· 사방댐타당성평가 부담금 : 353,000원 · 사방시설점검 부담금(부담금) : 450,000원 · 계류보전사업 부담금 : 9,008,000원 · 사방댐관리 : 306,000원 · 사방시설안전조치 부담금 : 46,000원 · 사방댐 부담금 : 21,312,000원	= = = = = =	353 450 9,008 306 46 21,312	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만 편성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6 :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납입완료(1차)
- 2019.12. :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납입예정(2차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댐 점검 : 월곶면 용강리 산34-5번지 외 2개소	
2018년	사방댐 건설 1개소 : 월곶면 용강리 419-11번지(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)	
2019년	사방사업 1개소 : 월곶면 성동리 212-19번지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1,259	1,259	-	-	
2018년	28,819	28,819	-	-	
2019년	11,097	7,320	-	3,777	11.30까지 집행현황

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조창희	전화	5988

(산사태 우려지 안전진단) (P - 89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1월 ○ 위 치 : 하성면 양택리 산127-5

○ 사업규모 : 사면부 A=0.5ha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생활권 주변 산지 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21,000**				**21,000**	**21,000**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21,000				21,000	21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산사태 발생 우려지의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가 반드시 필요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산림보호법	제45조의7
근거내용	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[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 제2장] 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하되,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양택리 소재 산지 1개소에 땅밀림, 사면침식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		비 고
산사태 우려지 안전진단	401-01 시설비	· 안전진단비 : 21,000,000원	=	21,00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21,000		21,000				21,000		
공정별	설계비									
	보상비									
	공사비									
	감리비									
	용역비	21,000		21,000				21,000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0. : 산사태 우려지 현장확인(유선민원접수)
- 2019.12. :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, 산사태 우려지 지정 절차 진행
- 2020.01. :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(진단결과에 따라 사방사업 등 진행여부 결정)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 10,000 :1 이상 (칼라)		
현장사진 (칼라)		

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조창희	전화	5988

(공공산림가꾸기) (P - 89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03월 ~ 2019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 관내임야

○ 사업규모 : 산림바이오매스단 4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숲을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, 생활권 주변 산림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98,193**	**85,182**	**85,182**	**-**	**40,080**	**-40,080**	**-13,011**	
국 비	49,721	43,091	43,091		20,040	-20,040	-6,630	
도 비	14,542	12,627	12,627		6,012	-6,012	-1,915	
시 비	33,930	29,464	29,464	-	14,028	-14,028	-4,466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산림과-19954('19.8.29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추경 예산 변경 확정 알림」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단 예산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조의2 1항
근거내용	제2조의2(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공공산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

○ 경기도 산림과-18668('19.8.13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추경 예산(안) 알림」에 따라 2회추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.
경기도 산림과-19954('19.8.29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**추경 예산 변경 확정** 알림」에 따라 e-호조 내 별도의 사업명을 생성하고 기존 '공공산림가꾸기'에서 예산을 분할하여

○ **'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' 사업명에 별도편성**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공산림가꾸기	합 계	= 85,182	
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·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: 19,713,250원 * 4명 = 78,853	
	201-01 사무관리비	·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 : 1,332,250원 * 4명 = 5,329 ·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 : 250,000원 * 4명 = 1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1. : 2019년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계획 수립
- 2019.02.~03. : 산림바이오매스단 근로자 모집공고
- 2019.03.~11. :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
- 2019.12.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: 4명 (2.~12.) - 숲을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,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로 산림재해 예방	
2018년	-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: 4명 (2.~12.) - 숲을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,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로 산림재해 예방	
2019년	-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: 4명 (2.~12.) -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70,450	52,136	-	18,314	
2018년	98,193	57,000	-	41,193	
2019년	85,182	80,609	-	4,573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조창희	전화	5988

(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) (P - 90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0월 ~ 2019년 12월 ○ 위 치 : 김포 관내임야

○ 사업규모 : 산림바이오매스단 4명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숲을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, 생활권 주변 산림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40,080**				**40,080**	**40,080**	
국 비		20,040				20,040	20,040	
도 비		6,012				6,012	6,012	
시 비		14,028				14,028	14,028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산림과-19954('19.8.29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**추경 예산 변경 확정** 알림」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단 추가 배정 및 인부임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조의2 1항
근거내용	제2조의2(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공공산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산림을 경제·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

○ 경기도 산림과-18668('19.8.13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추경 예산(안) 알림」에 따라 2회추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.
경기도 산림과-19954('19.8.29.)호「2019년 숲가꾸기(공공산림가꾸기) **추경 예산 변경 확정** 알림」에 따라 e-호조 내 별도의 사업명을 생성하고 기존 '공공산림가꾸기'에서 예산을 분할하여

○ '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' 사업명에 별도편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공산림가꾸기	합 계	= 40,080	
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·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: 9,329,500원 * 4명 = 37,318	
	201-01 사무관리비	·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 : 690,500원 * 4명 = 2,762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~12. : 산림바이오매스단(추가채용) 운영
- 2019.12.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산림바이오매스단 추가채용 : 3명 (10.~12.) -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40,080	-	-	40,08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조창희	전화	5988

(2019년 FTA피해보전 직접 지불제) (P - 90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1월 ~ 12월 ○ 위 치 : 샛별농원영농조합법인
(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-13, 하성면 석탄리 764-2)

○ 사업규모 : 목이버섯 시설재배 3,600㎡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임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267**	**21,608**				**21,608**	**21,341**	
국 비	267	21,608				21,608	21,341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경기도 산림과-26780(2019.11.15.)호 「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자금요청서(초안)알림」에 따라 예산 증감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유무역협정(FTA)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	제5 조
근거내용	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2019년 FTA직접피해보전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액이 확정됨에 따라, 추가 예산 확보 필요

○ FTA체결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, 임업인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FTA 피해보전직불제 (임업)	301-12 기타보상금	·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금 = 21,608,000원 = 21,608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18. : FTA피해보전사업 지급액 확정
- 2019.11~2019.12 : 피해보전직불금 결정통지 및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2018년 FTA피해보전사업 :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75-1, 175-2, 175-4번지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67	267	-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녹지과	산림보호팀장 조기영	담당자	녹지9급 이경은	전화	2371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사 업 설 명 서

공원관리과

(공원방범용 CCTV설치사업) (P - 92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0년 3월 ~ 7월 ○ 위 치 : 김포시 장기동 1549(첼로어린이공원) 외 3개소

○ 사업규모 : 방범용 CCTV 60대
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어린이공원 및 산지형공원에 CCTV 설치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**400,000**	**400,000**				**400,000**	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400,000	400,000				400,000		**특별조정교부금**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○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정기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예산 증액 [기획담당관-18062(2019.9.11.)호]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	제19조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
근거내용	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반영예정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2019.12월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, 김포한강신도시 내 이용률이 높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 고
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	401-01 시설비	**공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** · 부대공사비(전기,통신 관로공사) : 160,000,000원 · CCTV 설치 60대 : 4,000,000원 * 60개소	= = =	**400,000** 160,000 240,00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**400,000**		**400,000**				**400,000**		
공정별	설계비									
	보상비									
	공사비	400,000		400,000				400,000		
	감리비									
	부대비		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9. 9. 2019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
- 2019. 12.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(1개월 예정)
- 2020. 1. 추진계획 및 도로관리심의회 안건 제출
- 2020. 3. 사업발주 및 착공, 보안적합성 인증
- 2020. 7. 준공 및 공용개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	
2018년	-	
2019년	○ 어린이공원4호(마산동 620-1) 외 12개소 내 메인카메라 17대, 보조카메라 72대, 통신소프트웨어 89copy 등 설치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-	-	-	-	
2018년	400,000	-	400,000	-	
2019년	400,000	377,502	400,000	422,497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 10,000 :1 이상 (칼라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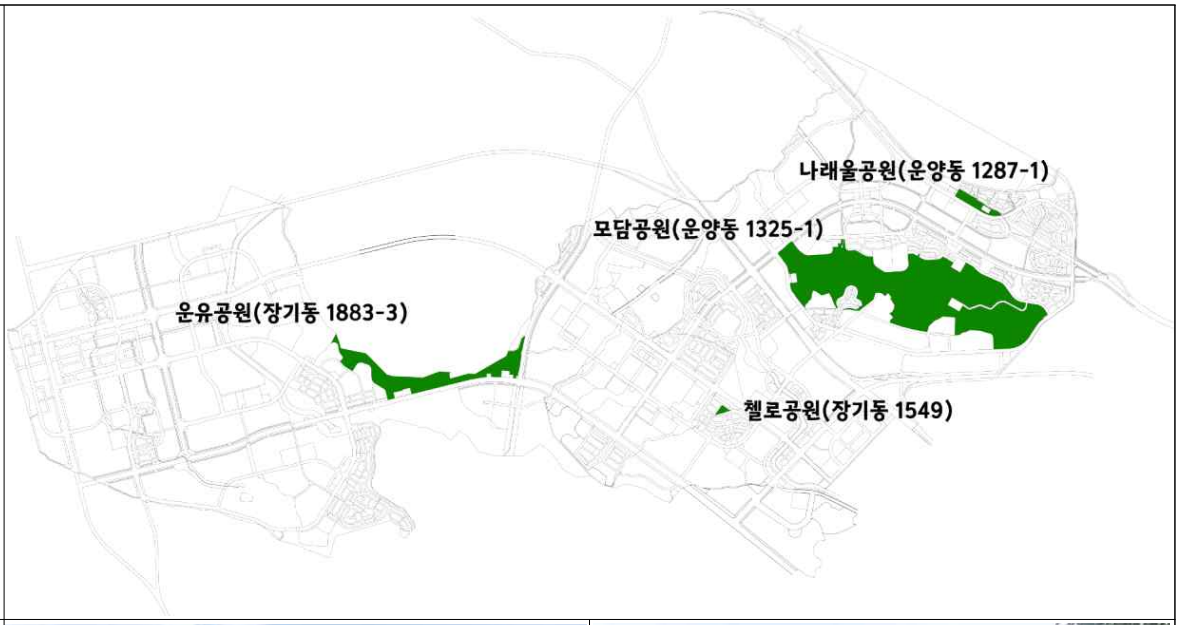
현장사진 (칼라)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공원관리과	공원관리2팀장 정영섭	담당자	녹지9급 최성은	전화	5641